

원 혜 영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 적정 법의관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 외국의 경우 인구 15만명당 1인의 법의관이 확보된 반면(검안·현장검시 및 부검업무) 우리나라는 법의관 1인당 월평균 10~15건을 적정 부검건수로 생각 할 경우 28~30여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 현장검시가 이루어질 경우 배 이상의 법의관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변사체에 대하여 국가가 검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 및 그 제도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이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변사체의 사인규명 및 사망의 종류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사

의 변사체 처리 지휘에 의거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동적인 부검업무에 국한하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변사체에 대한 부검결정권이 없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재가 크나 큰 문제점입니다.

해결 방향으로서는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 전문가 양성,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고 법의과 사무소(가칭)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임명 또는 민선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검시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법의학자를 배양할 토양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단기간 법의학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면서 확실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 검시관 양성 및 검시관 제도의 도입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원 혜 영 의원님

(마약분석과장 임미애)

감정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의 확보 등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검증방법의 마련에 대한 견해는?

-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검증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입니다. DNA분석 및 마약분석 분야에 대해 작년도에 인증을 획득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 인 태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법의학관의 결원율이 높은 이유가 예산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 법의학관의 처우문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부재 또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 인 태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 감정장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감정장비 점검 사항 목록 부재 등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음, 감정장비를 필수, 주요, 사용가능장비 구분 및 모든 실험기기들의 표준작업 지침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 국과수 감정장비는 감정장비 관리규정(국과수 예규 제147호) 및 국제공인 인증사업 규정에 맞도록 예방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고가인 주요장비에 대하여는 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주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정의 신뢰성·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장비 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문서영상과장 김동욱)

본 위원은 고 김기설씨의 군대시절 필적자료 사본을 얼마 전 입수했다. 만일,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유서 원본 및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내놓게 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 감정을 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종결된 사건을 저희 국과수에서 재 감정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의뢰를 할 경우, 검토해보겠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문서영상과장 김동욱)

만일 허위 혹은 거짓감정으로 재감정이 필요 할 경우 현재 어떻게 대처하는가?

- 문서감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지정된 감정인 1명이 감정을 시행치 않고 문서감정실 감정인 전원의 공동 심의를 거쳐 거기에서 얻은 결과를 최종 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판단하여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감정시는 1차 감정했던 증거물 이외 다른 증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경찰이 수사력 확보와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한층 향상된 공정성과 과학수사력을 갖춰야 함. 소장의 의견은?

-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과학수사력 향상은 국과수의 감정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 이관 및 인력·예산 증원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임. 소장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람.

- 국과수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현재 국과수의 감정업무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과수의 전 직원은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 (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 감정 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합의제는 전원 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홍 미 영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허위 또는 거짓 감정으로 이의가 제기 될 경우, 2차 감정 혹은 재감정이 필요함. 대처 방안은?

- 감정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한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허위 또는 거짓 감정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과 '심사합의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2차 감정 혹은 재감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국과수 제출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과수 분소간 온라인 전산망 교류가 안돼 DB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국과수 유전자감식 업무는 과거의 단순감정 업무에서 축적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감정의 품질관리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전산망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본·분소간 핵망 구축과 유전자감식자료 DB화에 대한 입법화 등 년차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및 법률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국과수 제출자료에 의하면 검찰·경찰·국과수 협의 하에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을 검토하여 입법추진중이라고 들었다. 이 법안은 무슨 내용인가?

-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 법률」은 사회적 침해도 및 재범율이 높은 살인강도강간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사건을 조기 해결하고, 장기 미해결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등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으로, 범죄현장 증거물, 특정범죄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및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전자감식정보은행은 범죄자의 조기검거와 강력범죄 예방 효과로 인해 미국('98), 영국('95), 캐나다('00)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가 치안과 범질서 유지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그러나 개인정보 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시민단체의 반발 사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시민단체의 반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더 많은 개인정보의 확인과 개인통제가 가능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있다는 것과
- 둘째,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생체정보 까지 관리하게 될 경우 범죄수사목적의 식별 이외의 분석된 유전정보가 오남용되어 질병 등의 개인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 셋째, 유전자정보D/B 구축 후 입력 대상이 확장되고 다른D/B와 연동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 넷째, 관계기관은 법률 등 제도적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시급성 강조로 유전자 DB구축사업의 정당성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반발사유는 유전자감식정보은행을 먼저 시작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검증된바있으며 국과수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홍 미 영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본 위원은 이 법안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및보관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 오 을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국과수 업무를 의과대학 및 민간연구소와 분담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법의학관련)

- 기본적으로 검안과 부검은 전문성을 갖춘 동일한 사람 및 국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검시 체계를 검안과 부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은 물론 정확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검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문가로 하여금 일련의 검시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검안 따로 부검 따로의 비효율적 검시제도는 부적절한 현 검시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법과대학의

교수들에게 검사의 역할을 맡긴다고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검시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 국과수의 범의 검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범의학 전문가를 수련 및 배출 시킬 수 있는 여건(처우개선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재 국과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촉탁의 제도와 같은 형태로 부검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고유 업무인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실무기관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무 성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대책방안은?

-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요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합의제는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유 기 준 의 원 님

(법외학과장 최영식)

국과수의 법외관 적정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 하는 지?

- 법외관 1인당 연간 부검건수는 150 ~ 200건 내외가 적당하나 연구소 법외관의 경우 연간 272건의 부검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소 법외관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 332건 내외의 부검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인구 15만당 1인의 법외관의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250 ~ 300여명의 법외관이 필요합니다. 부검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외관의 추가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 기 준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면수

유전자 감식 감정실적은 연평균 35%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감정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가?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백육십만명당 1명의 유전자 감식 전문인력이 있으나, 홍콩의 경우 인구 약 이십만명당 1명의 유전자감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에게 비해 약 6배 이상의 감정 인력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과의 비교하면 감정인력비율은 더욱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현 인원의 5배정도의 전문 감정인의 년차적 증원이 필요합니다.

유 기 준 의 원 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 문제로서, 현재 국과수는
이원화된 운영체제임. 외국의 사례는?

- 외국의 경우는 초동수사 관련 법과학적 감정기관은
경찰 산하에, 법의학적 감정기관은 위생국 산하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외국 사례

- 미국 : FBI법과학연구소, 州·都市 경찰법과학연구소
- 일본 :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
- 영국 : 경시청 소속 법과학연구소,
- 독일 : 연방범죄수사국 소속 범죄연구소

유 기 준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 감정장비 1,486대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해야 할 장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 감정장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총 235대(15.8%)이며, 향후 감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장비의 교체 및 첨단 신규장비 도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본소 684대중 198대(29%), 남부분소 215대중 37대(17.2%)

유 정 복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그동안 행자부와 인력증가에 대해 협의는 있었는지, 인력보충 및 정원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 인력증가에 대하여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협의결과 동부분소 직제신설 및 그에 따른 정원증가 (18명)가 있었으며, 올해 행자부에서 '06년 소요정원 파악 시 14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도 있음.
- 정원증가는 인건비예산 추가소요 등으로 인해 신중한 내부검토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필요하여 단시일 내 결정 및 조치는 어려우며 앞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면수

DNA시약예산이 고갈되어 유전자감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어
떤 대책을 마련해 왔는가?

- 경찰청의 지원을 통한 시약재료의 직접수급 등의 노력
으로 일부 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행정자치
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현재로서는 시약이 10월말이면 고갈될 상태인데
시약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경찰청의 시약재료의 직접수급 등의 노력으로 일부 확보가 가능하고 행정자치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요하지만, 12월 이후 시약재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부득이 긴급감정 우선으로 하므로 다수의 감정지연이 예상됩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지난 10년동안 경찰청과 국과수에서는 유전자자료 은행의 설치에 대해 주장해 왔으나 국과수의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왔나?

- 행정자치부는 부령으로 국과수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있어, 주로 경찰청에서 국과수와 협력하에 유전자자료은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행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없을뿐더러 상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 행정자치부는 훈령으로 국과수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고 행자부 업무 특성상 유전자자료은행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현재와 같이 국과수와 검찰청이 나눠서 유전자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장은 의견은?

- 두 기관의 유전자정보자료 관리에는 예산의 증액 및 보안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나 이는 시스템 상에서 기술적 보안을 하면 될 것이며, 상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시설 등을 활용, 운용하며 향후 유전자감식정보기관 통합시까지 잠정적으로 공동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 정 복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 면 수

DNA증거물 시료와 유전자처리보관 절차에 대한 자체처리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

- 범죄현장 증거물 DNA자료 사후관리 현황은 국과수 사무분장규정 제3장 7조관련 유전자분석과의 유전자 검색 업무에 해당하며, 범죄현장 증거물 DNA자료는 사건 증거물로부터 획득·축적된 자료로 수사 활용가치가 높아, 본·분소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Update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로 증거물에서 얻은 DNA잔량이 감정 후 남아있을 경우, 국과수 “감정증거물보존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냉동조건하에 보관하면서 추후 품질관리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은 향후 법무부/행정자치부 입안 발의 예정인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처리보관 절차로 검토될 것입니다.

유 정 복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국과수와는 별도의 법의학분야만을 독립적으로 나누어 별도의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에 대한 견해?

○ 변사체에 대하여 국가가 검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 및 그 제도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이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변사체의 사인규명 및 사망의 종류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사의 변사체 처리 지휘에 의거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동적인 부검업무에 국한하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변사체에 대한 부검결정권이 없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재가 크나 큰 문제점입니다.

해결 방향으로는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 전문가 양성,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고 법의관 사무소(가칭)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임명 또는 민선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검시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법의학자를 배양할 토양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단기간 법의학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면서 확실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 검시관 양성 및 검시관 제도의 도입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검시’ 업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행하여야 할 국가고유 업무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검시업무를 지금도 국가기관인 국과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과수 등 법과학적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인력관리는 기존 관련 학과의 학문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내의 신규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과학 전문가 집단의 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외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특성을 가지는 국과수에서 집적된 자료와 경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자원 활용면으로 보아도 절실히 필요하고 나아가 사회의 법과학적 필요성의 대두와 활성화에 발맞춰 전문 교육기관이나 대학의 제도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 합니다.

특히 국과수의 경우 타기관에 비해 업무의 특성이 매우 특성화되어 있는 반면 자체내의 교육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물에 대하여 실무를 요구하는 실습교육은 우리나라에 전무할 뿐 아니라 여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수사 분야의 선진성을 갖추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기관의 연수기관은 물론 대학교

과정의 법과학 코스(학사, 석사, 박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학의 저변 확대와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일환으로 법과학 대학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 창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감정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내구연한 10년
초과한 장비가 31.1%인 상황에서 2005년 예산
투입시 노후장비 교체율이 얼마나 향상 되는지
그리고 향후 장비현대화를 위한 대책은?

- 감정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예산 31억 투입시 내용연수 10년 초과 노후장비 235대중 34대를 교체하여 교체율은 24.8%로 향상되며,

※ 2005년 예산 31억은 본소 감정장비 구입 21억, 동부분소 10억원임

- 향후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 최신 감정장비를 보강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감정장비 현대화 2차 5개년 계획 수립 추진(2007~2011년) 등

이 재 창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
- 국과수 법의관의 검안서 작성은 위법이라는데 연구소에서 조치 사항은?
-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인원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감정결과 통보 후 그 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

- 부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의관 부족과 보수 및 직급에 있어 열악한 대우로 법의관 지원자가 없는 등 원활한 부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결원자가 있어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등과 비교해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거나 승진기회의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고 각종의료수당 및 봉급의 차이로 이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의관의 확충을

- 위해서는 부검의의 수당증액, 직급의 상향조정, 예산의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법률적인 문제 가능성이 예견되어 복지부에 질의 유권 해석을 받은 다음 중단 조치를 하였고 관련 법률제정을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 인원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분소부터 활성화하고 차후에 본소의 인력이 확충되면 적극적으로 현장검시에 임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과수에서는 감정결과 회보시 감정결과에 대한 활용도의 설문지를 동봉해서 처리하는 부서(범죄심리과)도 있으나 실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느정도 활용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영 순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이 국과수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법인가?

- 행자부 소속기관이면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조직발전의 정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 순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경찰청 이관시 감정내용 등의 객관성 유지에 우려가
있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은?

-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요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합의제는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이 영 순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는 소속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전체 과학수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연구소의 입장은?

-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국과수의 기능이 경찰의 민생 치안 및 초동수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과 선진국의 경우도 초동수사 관련 감정기능은 경찰청 소속으로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경찰청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님

(화학분석과장 김은호)

계절에 따른 음주측정기의 편차 및 고성능 음주 측정기의 도입 필요성

- 음주운전 여부 판단 과정은, 호기중 알콜농도 측정 장비 검사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채혈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피의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어도 실제 실험한 혈중 알콜농도값은 0.05% 미만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는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채혈시각과 음주운전 적발 시각까지의 시간 경과를 역산하여 피의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호기중 알콜농도 측정 장비는 연료전지(Fuel Cell) 방식의 장비로서, 현재까지 개발된 호기중 알콜농도 측정 장비 중 고성능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는 측정 방법상의 문제이고, 측정 원리는 기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합니다. 즉, 호기중 알콜농도 측정 장비는 '호기중으로 배출되는 알콜농도와 혈중 알콜농도는 평균 1 : 2,100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실험적 결과에 근거하여 호기중 알콜농도를 혈중 알콜농도로 환산하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그러나 1 : 2,100이라는 값은 실제 실험군에서 얻은 비율인 1 : 1,600 - 1 : 2,600의 평균값입니다. 따라서 호기중 알콜농도는 혈중 알콜농도와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값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 외국의 경우 당 국과수와 같은 법과학감정소에서 경찰에서 사용하는 호기중 알콜농도 측정장치를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보정해 주고 있으

며,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의 운용 실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니
운용 및 교육 실태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